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인 창조기업의 제외업종에서 부동산업 등을 삭제>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28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1인 창조기업의 제외업종에서 부동산업 등을 삭제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장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8.
3. 회부연월일 : 2025.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홍보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어,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다양한 신산업 육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8년 개정)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0년 개정)은 제외 업종에서 금융업·부동산업 등을 삭제하고, 유흥·향락·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음.

이에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

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Ⅲ. 검토의견

1. 1인 창조기업의 제외업종에서 부동산업 등을 삭제(안 제2조 제1호).

개정안은 1인 창조기업의 정의에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하고 그 외에 부동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u>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u> 를 말한다. <u><단서 신설></u>	1. ----- ----- ----- ----- <u>자를</u> -----. <u>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조는 “1인 창조기업”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 제2조제1항1)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그 주된 사업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제조업, 주점업 등 뿐만 아니라, 부동산업, 금융업 등 총 32개 업종을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1. 광업	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나. 금속광업	06
	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08
2. 제조업	가. 담배제조업	12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다. 1차 금속 제조업	24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나. 수도사업	36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5. 건설업	가. 종합건설업	41
	나. 전문직별 공사업	42
6. 도매 및 소매업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 1)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7. 운수업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나. 수상 운송업	50
	다. 항공 운송업	51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8.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숙박업	55
	나. 음식점 및 주점업	56
9. 금융 및 보험업	가. 금융업	64
	나. 보험 및 연금업	65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개정안은 현행과 같이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산업 간 융합과 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이 어렵다고 보고,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 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24-203호, 2024. 4.30.] 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공급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자문·감정평가업)도 포함되는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주거용 또는 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보수, 자문서비스, 감정평가 등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볼
수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부동산업(중분류 68) 분류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	부동산 임대업 (6811)	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기타 부동산 임대업(68119)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9)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682)	부동산 관리업 (682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68211)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6821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6822)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부동산 투자 자문업(68222)
		부동산 감정 평가업(68223)

또한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²⁾에 따
르면, 부동산업 종사자 총 93만 5,831명 중에서 부동산 개발업·임대업·
공인중개서비스업을 제외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부동산 관리
업·자문서비스업·감정평가서비스업·정보제공서비스업)는 35만 3,109명(
37.7%)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2) 국토교통부, 2024.12.

개정안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대상에 사행산업 등 최소한의 업종만을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신산업의 창출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유사 입법례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18.12.11. 개정)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12.8. 개정) 역시 제외업종에서 부동산업을 삭제하고, 창업지원 및 인력지원의 대상을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 창업지원 제외업종 ('18.12.11.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gambling 및 betting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상 인력지원 제외업종 ('20.12.8.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1. 부동산업 2. 일반유흥주점업 3. 무도유흥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gambling 및 betting업 6. 무도장 영업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주점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무도장 영업업

다만,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입법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1인 창조기업의 지원 제외 업종을 과도하게 완화할 경우 1인 창조기업이 갖추어야 할 ‘창의성과 전문성’의 기준이 약화되고 단순 1인 기업도 포함되어 정책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59